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382 발 의 년 월 일: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:이병도, 박강산, 박상혁,

박유진, 서상열, 서춘오, 성흠제, 이병윤, 이용균, 임만균, 정준호, 최기찬, 황철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 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도 포함되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의 의정활동시에도 전문성 확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범위에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"의원"을 "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 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"으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①・	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회는 소속 <u>의원</u> 들이 의정활	③ <u>의원(「공직선거</u>
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	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
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	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
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	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

문서번호

2023101100000010

미첨부사유서(2호)

요 청 인: 이병도 의원

담 당: 오희선 과장

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

접 수 일: 2023.10.11.

회 신일: 2023.10.13.

내용문의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제3항의 '의원'을 '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'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같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의 '의원'에 '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'을 포함할 경우 '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'하는 범위는 같은 조례에 근거한 다른 조례(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등) 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상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박지영

2 02-2180-7952

e-mail: 7magic7@seoul.go.kr